

2008. 5.

條例案審查報告書

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08.5.15	2008.5.15	2008.5.22	2008.5.22	기획감사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 효율을 높이고 조례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또는 장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 16개의 조례를 정부조직법에 맞게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 중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또는 장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 명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삼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삼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